목 포 시

시 보

낭만항구 목포 ROMANTIC PORT MOKPO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764호 2026. 10. 26.(월)

고 시

○ 목포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2

회람							

발행 : **목포시** 편집 : **홍보과** ☎ 061-270-8539

목포시 훈령 제880호

「목포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한다.

2026년 10월 26일

목 포 시 장

목포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

목포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감사담당관”을 “감사실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주사로”를 “감사실 감사팀장으로”로 한다.

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면책심의위원회 설치) ① (생 략)	제7조(면책심의위원회 설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며, 위원장은 부시장으로, 부위원장은 자치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, 위원은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장,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.	② ----------감사실장 ----------.
③ 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주사로 한다.	③ ----------감사실 감사팀장으로----------.
<신 설>	④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